

의안번호	2213672
의 퇴 인	최은석의원
회 답 일	2025.11.10.
추계번호	25E5667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소득세 과세표준액 계산시 물가연동지수 반영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액 계산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할 경우, 재정수입은 2026년 4.3조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8.0조원(연평균 △5.6조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

(단위: 조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과세표준액 계산시 물가연동지수 반영 (안 제14조)	-4.3	-4.7	-5.5	-6.3	-7.2	-28.0	-5.6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 내용	비고
1	안 제14조 (과세표준의 계산)	○ 소득세 과세표준액 계산시 물가연동지수 반영 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한 금액을 사용 ○ 부칙에 따라, 2025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 － 2026.1.1.부터 시행하되, 이 법 시행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되어,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
 - 법안의 부칙에서 2026.1.1.부터 시행하되, 이 법 시행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2026년 신고분(2025년 귀속분)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
- 2023년 귀속 소득 기준 근로소득세, 종합소득세, 양도소득세의 국세통계 신고현황 자료(과세표준 구간별 100여개 구간 자료)를 이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
 - 동 자료는 국세청의 집계자료(aggregate data)이며, 현재 이용 가능한 최신연도 통계자료임(국세청의 내부 자료)
 -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경우, 각각의 세수효과를 추계하여 합산하되,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인원은 제외하여 추계
 - 양도소득세의 경우,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현황 합계를 연간 신고현황으로 전제
 -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세수 효과를 추계하지 못함
- 국회예산정책처(2025.9)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활용하여 전망
 - 법안에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함에 따라,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물가연동지수 적용한 연도별 과세표준

- 국회예산정책처(2025.9)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활용하여 전망하되, 2026년 신고분부터 물가연동지수가 반영되는 것으로 가정
 - 과세표준 환산금액은 기존 방식으로 구한 과세표준(소득금액-소득공제)에 (1-소비자물가상승률)을 곱하는 방식으로 도출

[표 2]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(국회예산정책처 2025.9)

	2024 실적	2025전망	2026전망	2027전망	2028전망	2029전망
소비자물가상승률 %	2.3	2.0	1.9	2.0	2.0	2.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~2029, 2025.9.

나.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

- (향후 5년간 1인당 총급여)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00여개로 구분한 후,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2023년 귀속 기준 1인당 총급여 금액을 도출한 후, 동 금액에 향후 5년간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(2025.9)을 반영하여 추정
 - 명목임금상승률(%): ('26) 3.2 ('27) 3.3 ('28) 3.3 ('29) 3.3
- (향후 5년간 1인당 종합소득금액 전망)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00여개로 구분한 후,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2023년 귀속 기준 1인당 종합소득금액 금액을 도출한 후, 동 금액에 향후 5년간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증가율 전망(2025.9)을 반영하여 추정
 - 경상GDP 증가율(%): ('26) 4.1 ('27) 4.0 ('28) 4.0 ('29) 3.9
- (향후 5년간 1인당 과세표준 전망, 현행) 향후 5년간 1인당 총급여(1인당 종합소득금액)에 과세표준 구간별 2023년 기준 총급여대비 과세표준금액 비율(종합소득금액 대비 과세표준금액)을 적용하여 추정

- 총급여대비 과세표준 금액 비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.7%이나, 과세표준 금액이 30억원 초과일 경우 97.9% 수준(2023년 귀속 기준)
- 종합소득금액대비 과세표준 금액 비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.1%이나, 과세표준 금액이 30억원 초과일 경우 99.1% 수준(2023년 귀속 기준)
- (향후 5년간 1인당 과세표준 전망, 개정안) 현행 과표구간별 1인당 평균 과세표준액에 연도별 (1-소비자물가상승률)을 곱하여 추계
 - 개정안에 따른 과세표준은 물가상승만큼 현행 과세표준에 비해 축소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방법임
- (향후 5년간 1인당 산출세액 전망, 현행) 1인당 산출세액은 1인당 과세표준에 명목세율(6~45%)를 곱하여 추계
 - 1인당 산출세액, 현행 = 1인당 과세표준, 현행 $\times$ 명목세율(6~45%)
- (향후 5년간 1인당 산출세액 전망, 개정안)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산출세액은 1인당 과세표준에 물가연동지수가 반영된 과세표준 구간별 명목세율(6~45%)를 곱하여 추계
 - 1인당 산출세액, 개정안 = 1인당 과세표준, 개정안 $\times$ 명목세율(6~45%)
- (향후 5년간 1인당 세수효과 전망) 1인당 세수효과(결정세액 변화분)는 1인당 산출세액 변화에 따른 1인당 세액공제·감면액을 추계한 후, 이를 1인당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추계
 -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세액공제·감면액은 산출세액 변동에 연동되는 세액공제·감면을 별도로 감안하여 추정
 - － 근로소득세는 1인당 세액공제·감면액 추계시 과표구간별 평균세액공제·감면액 중 54.7%¹⁾는 산출세액에 비례해 변동하고, 나머지 45.3%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
 - － 종합소득세는 1인당 세액공제·감면액 추계시 과표구간별 평균 세액공제·감면액 중 57.0%²⁾는 산출세액에 비례해 변동하고, 나머지 43.0%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

1) 전체 세액공제·감면액 중 산출세액에 연동되는 항목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,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있음

2) 전체 세액공제·감면액 중 산출세액에 연동되는 항목에는 기장세액공제, 배당세액공제, 외국납부세액공제,

- (향후 5년간 총 세수효과 전망) 개정안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세수효과는 과세표준 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기준으로, 개정안에 따라 산출된 1인당 세수효과에 각 구간별 결정세액 인원수를 곱하여 총 세수효과를 추계
 - 향후 5년간 과세표준 구간별 인원수는 최근 고물가 시기를 제외한 과거 5년 평균 증가율을 따른다고 가정, 인원수 증가율에 따라 세수효과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에 유의할 필요
 - 앞에서 추정된 중복자의 근로소득세 세수효과를 차감하여 전망
- 추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자(이하 ‘중복자’)의 경우, 이 중복자들을 제외하고 세수효과를 추계
 - 근로소득자 중에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(예시: 사업소득,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 등)이 있어,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발생
 - 국세청에서 제공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인원 중 종합소득신고자수 비중을 활용하여 중복자 인원을 제외한 근로소득신고 인원(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)을 대상으로 총세수효과를 추계
- (근로소득세 귀속기준 세수효과) 개정안에 따른 근로소득세 세수효과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△16.5조원(연평균 △3.3조원)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근로소득세 세수효과(소득 발생연도 기준, 귀속 기준)

(단위: 조원)

세목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근로소득세 합계	-2.5	-2.8	-3.2	-3.8	-4.3	-16.5	-3.3
0~1,400만원	-0.1	-0.1	-0.1	-0.1	-0.1	-0.4	-0.1
1,400~5,000만원	-0.6	-0.7	-0.8	-0.9	-1.0	-4.0	-0.8
5,000~8,800만원	-0.6	-0.7	-0.8	-0.9	-1.0	-4.0	-0.8
8,800만원~15억원	-0.6	-0.6	-0.8	-0.9	-1.0	-3.9	-0.8
1.5~3억원	-0.3	-0.4	-0.4	-0.5	-0.6	-2.2	-0.4
3~5억원	-0.1	-0.1	-0.1	-0.2	-0.2	-0.8	-0.2
5~10억원	-0.1	-0.1	-0.1	-0.1	-0.2	-0.6	-0.1
10억원 초과	-0.1	-0.1	-0.1	-0.2	-0.2	-0.7	-0.1

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음

- (종합소득세 귀속기준 세수효과) 개정안에 따른 근로소득세 세수효과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△8.9조원(연평균 △1.8조원)으로 추계
 - 근로소득세 중복신고자의 근로소득세수분 제외한 효과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수효과(소득 발생연도 기준, 귀속 기준)

(단위: 조원)

세목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종합소득세 합계	-1.3	-1.5	-1.7	-2.0	-2.3	-8.9	-1.8
0~1,400만원	0.0	0.0	0.0	-0.1	-0.1	-0.2	0.0
1,400~5,000만원	-0.2	-0.2	-0.2	-0.3	-0.3	-1.2	-0.2
5,000~8,800만원	-0.1	-0.2	-0.2	-0.2	-0.3	-1.0	-0.2
8,800만원~15억원	-0.2	-0.2	-0.2	-0.2	-0.3	-1.1	-0.2
1.5~3억원	-0.4	-0.4	-0.5	-0.6	-0.6	-2.5	-0.5
3~5억원	-0.1	-0.2	-0.2	-0.2	-0.3	-1.0	-0.2
5~10억원	-0.1	-0.2	-0.2	-0.2	-0.3	-1.0	-0.2
10억원 초과	-0.1	-0.1	-0.2	-0.2	-0.3	-0.9	-0.2

라. 양도소득세

- (향후 5년간 1인당 과세표준 전망) 각 구간별로 양도소득세는 변동이 큼에 따라, 2020~2023 귀속연도 평균 기준으로 1건당 과세표준을 도출한 후, 동 금액에 향후 5년간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증가율 전망(2025.9)을 반영하여 추정
 - 경상GDP 증가율(%): ('26) 4.1 ('27) 4.0 ('28) 4.0 ('29) 3.9 ('30) 3.9³⁾
 - 양도소득세 역시 과세표준 구간을 100여개로 구분한 자료를 활용하여 세수효과 추계
- (향후 5년간 총 세수효과 전망) 1건당 과세표준에 개정안이 반영된 과세표준 구간별 명목세율(6~45%)를 곱하여 개정안 전후의 산출세액을 구하고, 이에 각 구간별 신고건수를 곱하여 총 세수효과 추계

3) 2030년 전망은 없어, 2029년 전망치를 준용

- 양도소득세의 신고 건수와 과세표준은 국세통계연보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산하여 사용(2020~2023 귀속연도 평균 기준 약 86.6만건)
 - 향후 1인당 과세표준금액은 경상GDP 증가율을 따른다고 가정
- 별도세율로 과세됨에 따라, 소득세 기본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 과세표준(주식 양도소득, 고율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⁴⁾)은 제외하고, 동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따른 산출세액 추계
 - 별도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비중이 전 과표구간에 균등하게 분포하고, 건당 과세표준이 일정하다고 가정함에 따라, 별도세율로 과세되는 주식(27.4%⁵⁾)과 고율과세 대상 자산(11.7%⁶⁾)의 합계(39.1%)만큼 신고건수 및 과세표준이 감소
- 개정안에 따른 총세수효과(총결정세액변화분)는 총산출세액변화분에서 산출세액 중 주요 세액공제·감면대상액의 비중을 차감하여 추정
 - 총 산출세액 중 주요 세액감면항목(8년 이상 자경농민,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감면)의 비중은 2020~2023년 평균, 6.6%

□ (귀속기준 세수효과) 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수효과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2.5조원(연평균 △0.5조원)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수효과(소득 발생연도 기준, 귀속 기준)

(단위: 조원)

세목	2024	2025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양도소득세 합계	-0.5	-0.5	-0.5	-0.5	-0.6	-2.5	-0.5
0~1,400만원	0.0	0.0	0.0	0.0	0.0	0.0	0.0
1,400~5,000만원	0.0	0.0	0.0	0.0	0.0	-0.1	0.0
5,000~8,800만원	0.0	0.0	0.0	0.0	0.0	-0.1	0.0
8,800만원~15억원	0.0	0.0	0.0	0.0	0.0	-0.2	0.0
1.5~3억원	-0.1	-0.1	-0.1	-0.1	-0.1	-0.3	-0.1
3~5억원	0.0	0.0	0.0	-0.1	-0.1	-0.2	0.0
5~10억원	-0.1	-0.1	-0.1	-0.1	-0.1	-0.3	-0.1
10억원 초과	-0.2	-0.2	-0.2	-0.3	-0.3	-1.2	-0.2

4) 1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, 2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, 미등기 양도

5) 총양도소득 대비 주식양도소득 비중, 2020~2023년 평균

6) 총양도차익 대비 고율과세대상 양도차익 비중, 2020~2023년 평균

4. 세수효과 요약

- (귀속기준) 소득 발생연도 기준으로 살펴보면,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및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라, 소득세수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28.0조원(연평균 △5.6조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법안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2026년 신고분(2025년 귀속분)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(소득 발생연도 기준, 귀속 기준)

(단위: 조원)

세목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합계	-4.3	-4.7	-5.5	-6.3	-7.2	-28.0	-5.6
근로소득세	-2.5	-2.8	-3.2	-3.8	-4.3	-16.5	-3.3
종합소득세	-1.3	-1.5	-1.7	-2.0	-2.3	-8.9	-1.8
양도소득세	-0.5	-0.5	-0.5	-0.5	-0.6	-2.5	-0.5

- (징수 기준) 소득세 세목별로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소득세는 2026~2030년 동안 총 28.0조원(연평균 △5.6조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징수 기준으로 조정시, 근로소득세·종합소득세·양도소득세 모두 2025년 귀속분에 대한 세수가 2026년 전액 납부되는 것으로 전제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(징수 기준)

(단위: 조원)

세목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합계	-4.3	-4.7	-5.5	-6.3	-7.2	-28.0	-5.6
근로소득세	-2.5	-2.8	-3.2	-3.8	-4.3	-16.5	-3.3
종합소득세	-1.3	-1.5	-1.7	-2.0	-2.3	-8.9	-1.8
양도소득세	-0.5	-0.5	-0.5	-0.5	-0.6	-2.5	-0.5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강민지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민지	02-6788-4746	min1231@assembly.go.kr